

제30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1. 4. 1(금), 16:00 ~ 17:30

2. 장 소 : 윤곡관 제1회의실(윤곡관 204호)

3. 참석 : 총 13명 중 9명 참석

- 참석 평의원 : 주동표 의장 직무대행, 김진우, 박상호, 박윤규, 박정웅, 박철균, 이재호, 이해진, 조중열 평의원(이상 9명)
- 불참 평의원 : 임원형 평의원(이상 1명)
- 공석 : 3명

4. 회의안건

가. 의안

- 안건1. 개방이사추천위원 선
- 안건2.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규칙 개정(안)

5. 개회선언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제 30차 대학평의원회 성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근태 : 제30차 대학평의원회 성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분 중에서 현재 공석인 교원대표 2명, 학생대표 1명을 제외하고 참석가능한 분이 총 10명입니다. 현재 참석한 의원은 8명으로 과반수가 넘어 성원이 되었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30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현재 평의원들 중 몇 분이 결원이고,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김관균 평의원 후임으로 김진우 평의원께서 오셨습니다.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의원 김진우 : 예, 안녕하십니까, 김진우입니다.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기계공학과 77학번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오늘 논의할 안건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간사 김근태 :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오늘 주 안건은 개방이사 추천위원 선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주대학교평의원회 규칙 개정(안), 학교 보고 사항, 교원대표 대학평의원 추천을 위한 선출위원회 구성 원료 건 등 보고사항입니다.

< 간서명란 >

의장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우선 아시다시피 박영무 의장이 연구년 관계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늘 안전은 개방이사 추천위원 안건입니다. 이것은 1월에 27차 평의원회에서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그 사이에 평의원회와 법인 간에 서류가 오가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 논의를 새로 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까운 시간이지만 오늘 모이시자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간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법인하고 평의원회 사이에 오고간 공문은 앞쪽에 정리되어 있고 양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발췌를 해놓은 것입니다. 금년 3월에 이사회 개방감사 1명의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 후임추천을 위해서 작년 11월 25일에 법인에서 처음으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임 평의원회 의장께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이 있다고 시정해달라는 답변서를 12월 1일에 보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자료에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에 따라서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와 아주자동차대학교평의원회가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해 우선 논의를 해야 하고, 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주대학교평의원회에서 2인, 아주자동차대학에서 1인, 법인에서 2인을 추천하도록 규정한 대우학원 정관 18조는 시정되어야 하며, 지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때는 처음으로 개방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문제 제기만 하고 개방이사 추천을 진행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곤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2월 2일 법인에서 다시 추천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현 정관에 수록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은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 공포된 것임으로 적법하다,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가 제기한 사항은 지난 추천위원회 어느 서류에도 주장된 내용의 근거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12월 8일 평의원회 의장이 회신을 보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서 역시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와 아주자동차대학교평의원회가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근거와 관련해서는 대학평의원회 1,2차 회의록에 문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시 재단 측 개방이사추천위원으로 참여한 분에게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2월 9일에 법인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인원이 아주대학 2명, 아주자동차대학 1명, 법인 2명 이렇게 된 까닭이 아주대학교의 교원 수가 아주자동차대학에 비해 월등히 많지만 양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언더라인 됐습니다. 언더라인은 제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 문서로서 아주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록

< 간서명 판 >

의 장



은 문제가 있다. 공식문서로는 요청받은 바 없다고 답변이 왔고, 향후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발생될 공석에 대한 책임은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에 있다고 했습니다. 1월 26일에 27차 평의원회를 하면서 이런 사항을 검토하고 대우학원 정관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절차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지원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문의했는데, 대우학원과 같은 상황에서 두 대학교 평의원회의 협의과정 및 동의과정 없이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추천위원회 구성을 결정할 수 있는가? 현재 우리 대학이 그렇습니다. 학교법인의 정관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자체 혹은 그 입법 취지에 위배될 경우 정관의 관련조항을 수정 않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달 뒤 2월 26일에 답변이 왔는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와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학원의 정관조항은 관련 법령시행 이전에 개정되어 정관변경 인가를 받았으므로 정관개정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있습니다. 3월 8일에 다시 법인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2011년 3월 18일까지 구성해 달라 그렇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아주대학교 평의원회 의장에 있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3월 16일에 27차 대학평의원회 논의결과에 따라 답변을 했습니다. 27차 대학평의원회에서 정관 18조 1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표결한 결과 찬성 3명, 반대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금번 개방이사추천 위원회는 구성할 수 없으며 이는 의장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평의원회 표결 결과다. 아울러서 정관 개정을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3월 24일, 며칠 안 됐습니다. 다시 공문이 왔는데 평의원회에서 실시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논의는 사립학교법에서 인정한 대학평의원회의 권한이 아니다, 따라서 그 표결 결과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각 구성단위의 추천위원회 위원을 취합하여 법인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니 3월 31일까지 구성, 통보해달라고 했는데, 마지막 3월 24일 공문이 오면서 문서들이 첨부가 되어 왔습니다. 관련 규정, 이게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당초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대학평의원회 측과 전혀 상의가 없이 재단에서 일방적으로 진척을 시켰고 특히 인원이 2:1:2로 상의 없이 규정이 결정 됐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번 27차 평의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교과부의 규정이 참고로 왔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항이 있는데 회의자료 17쪽에 보시면 2008년 5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낸 문서로 학교법인 임원/정관 안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문서는 학교 쪽에는 안 옵니까? 법인에

< 간서명란 >

의장

만 갑니까?

간사 김근태 : 네.

(박정웅 평의원 참석)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네, 그래서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아래쪽에서 두 번째, 별표 부분을 봐주시죠. 학교법인이 대학, 전문대, 고등학교를 각각 1교씩 설치·경영하고 있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3교 중 어느 한 곳(대학평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을 정하여 두어야 하며, 위원을 구성할 때 위원 정수 1/2범위 내에서 3개교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관에서는 추천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지금 3명이 대학평의회 쪽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아주자동차대학과 저희대학이 1명과 2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지난 번 논의할 때까지는 이런 내용을 몰랐었고 양 교의 교수수를 비교할 때 2명과 1명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느낌들이 많으셨던 걸로 아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판단해볼 때에는 이 정관을 문제 삼아서 개방이사 추천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정관이 개정되더라도 이런 규정에 의거해서 다시 구성을 해야 될 것이므로 현행 인적구성과 별로 달라질 것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몰랐던 상황이 새로 알려졌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다시 알려드리고 이런 상황에 기초해서 다시 논의해 주십사 오늘 어려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아주자동차대학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저는 없습니다. 전임 평의원회 시절에 그때는 양 교 평의원 회 의장님끼리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박영무 의장은 통화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그 때 문서화 된 것은 없습니까?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우리 아주대학평의원회와 재단과의 관계만 박영무 의장 시절에 왔다갔다한 서류가 보여집니다. 사실은 우리 구성원이라고 하면 아주자동차대학 평의원회도 같이 협의가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지만 교과부에서 의거한 부분에 의하면 구성 조직이 아주자동차대학은 다른 조직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동표 의장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존 법인 입장과 크게 달라질 바 없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아주대학교가 아주자동차대학보다 규모가 크고 아주자동차대학은 단과대 정도의 규모인 관계로, 우리 아주대학교의 평의원회가 섭섭한 부분이 있더라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수님들도 우리 일원이고 하기 때문에

< 간서명란 >

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구성대로 평의원회에서 진행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구성비가 이런 식으로 결정 된 근거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평의원회에서 아무도 모르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이일영 의장님 시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문서를 보니 이런 규정이 있어서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규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지침, 안내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여기 취지도 충분히 존중할만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까지 적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를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정관에 규정된 2명, 1명, 2명의 구성비가 특별히 달라질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동표 의장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만 한 가지, 교육부에서도 인정한 바대로 사전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남지만 그 논의를 재개해서 결론이 난다고 해도 지금 현재 틀에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재논의 한다든지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27차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 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지만 제 의견으로는 이번에 추천을 하는 것으로 번복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의견들 말씀해주시죠.

평의원 이해진 : 큰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이재호 평의원 말씀하신대로 향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평의원회하고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와 그리고 기존 루트를 깨지 않겠다는 선에서 매듭이 지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평의원 박정웅 : 법인에서 온 공문에 따르면 3월 31일까지 구성, 통보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한을 경과했는데 언제까지 유효한 건지요?

간사 김근태 : 그 규정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이사장님이 개방이사 임기만료 통보를 대학평의원회 의장에게 하고 통보를 받은 의장은 곧바로 10일 이내에 추천위원회 구성을 이사장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면 그에 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임기만료 3개월 전이라 함은 그 이전에 결정을 해서 끝내야 되는 거죠.

평의원 이재호 : 이미 그 시점은 지나갔으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한을 말씀해주시죠.

간사 김근태 : 현실적인 일은 5월에 결산이사회가 있습니다. 통상 셋째 주 금요일로

< 간서명란 >

의장

예상하기 때문에 역순으로 따지면 4월에는 이사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5월 이사회와 동시에 선임이 되어야 하는데, 통상 학내 프로세스를 보면 2주 전에 자료를 넘기게 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러면 신임감사가 이번 결산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간사 김근태 : 그 상황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지금 말씀대로 4월 이사회가 없으면 신임감사 선임이 5월 이사회가 되고, 그런데 5월 이사회는 2010학년도 결산을 하는 자리인데요.

간사 김근태 : 한 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이렇게 급히 모여야 할 이유가 없었네요.

간사 김근태 :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되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외부에서 추천하는 분도 있고 5분이 모여서 추천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최소 2-3차례는 모이셔야 하니까 긴급하긴 긴급하죠.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마도 재단 쪽에서 평의원회 불만사항이 뭔지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인적구성 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심지어 3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언더라인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12월 9일에 보내오는 문서를 보면 아주대학교와 아주자동차대학을 2:1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양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했지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만일에 이번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때 이런 룰이 있다는 것을 알렸다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텐데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제가 왜 일정 관련해서 얘기를 했나하면 이 서류들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지금 감사선임이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했을 때 결산보고에 문제점이 있다, 결산보고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결산보고에 2명의 감사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산보고서를 교과부에서 수령을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일이 이루어져야하는가 물었을 때 대답은 이사회가 있기 전에 한달 정도 검토를 해야 한다. 결산이사회가 5월 중에 있으니까 4월 중에는 개방감사가 선임되어야 하고 따라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2~3회 모여야 한다면, 정말 급하게 3월 말까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건 아무 걱정할 거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 가지 규정들을 살피고 쟁여서 우리한테 정확

한 정보를 주고 그리고 나서 서로 간에 협조도 하고 고려도 하고 해야 할 상황에서 정확치 않은 정보를 주고 우리한테 시한을 설정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방식은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박윤규 : 개방이사 2명만 추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개방감사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 중에서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에 할당된 추천위원 2분을 선정하는 회의입니다.

간사 김근태 :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결정, 그리고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추천 뜻으로 되어 있는 2명, 오늘 회의가 끝나면 범인하고 아주자동차대학 평의원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추천위원을 추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평의원 박윤규 : 지난번에 회의를 보면 2시간씩 4시간씩 하게 되는데요, 간단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원뿌리를 생각하다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도 없고, 한달에 한 번씩 회의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 2명을 이 중에서 선출을 해서 한 번 부딪혀 보면 되는 건데, 어렵게만 생각하면 한도 없이 어렵게 끌려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으면 차기에 그것을 대두시켜서 이 자리에서라던가 이사회 통과라던가 회의를 하는 게 바람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자, 정리하겠습니다. 추천위원회를 추천하는 데에는 동의를 해주시는 거죠?

(전원 동의)

동의를 해주셨고요, 추천위원 2명 추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평의원회에서 2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죠. 어느 분이 적합하시다던가...

평의원 이해진 : 지난번에는 어떻게 하셨죠?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지난번에는 교수 중에서 한 분이 선정이 되었고, 동창회에서 한분을 위촉하자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동창회에서 다시 교수님들이 맡아달라고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1기 때 추천위원으로 활약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 때 이순일 교수가 평의원이었고, 이순일 교수가 추천이 되고 저는 평의원이 아니었는데 저하고 동창회에서 추천하는 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결론을 내렸었고, 그 때 동창회하고 얘기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한테 추천위원 의뢰가 와서 해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순일 교수하고 추천위원을 구성 했습니다. 그때는 추천 작업을 별 무리 없이 끝을

< 간서명 란 >

의장



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추천 작업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추천위원회 단체에서는, 저희가 하는 일은 개방이사와 감사 2배수를 추천합니다. 2배수를 선정하고 추천하는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순위를 매겼고 그 순위대로 반드시 된다는 것은 아니겠으나 최대한 그 순위가 지켜지도록 노력한다는 일종의 신사협정이 있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순서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개방이사로는 아주대학교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분은 1명, 재단에서 추천한 분 중에 2명이 되었고, 개방감사는 아주자동차대학에서 추천한 분이 되어서, 이렇게 되니까 운영에 있어 상당히 협조적으로 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타 대학들을 보니까 제가 관동대를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사실 이 사회 구성이 팔이 안으로 굽는 스타일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사립대학 어디를 가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내다보니까 감정이 앞서지 않나, 회의 하는 스타일들이 그렇다보니까 막혀가지고 더 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사회에서도 요구하는 게 터무니없는 것들을 아닐 테고 자기네 방식대로의 일인데 가까운 쪽을 선택을 하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부딪히고 간다면 회의도 발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리를 타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교수님 말씀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겠지만 실제 그렇게는 안 가집니다. 저는 회의록에 그 사람들도 근거자료 없이 터무니없이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시다보면 약간 섭섭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끌려가는 맛이 있어야지, 남북대결의 방식으로 회의를 하다보면 어느 한 건에 대해서 평화롭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손해 보더라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안보고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쪽 지켜보니까 그런 감정들을 앞에 대고, 지난번에도 회의 중간에 폐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처장 와라 했는데 출장 중이라서 오지 못한다고 하니 그럼 그만합시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삭막하게 가다보면 앞으로도 이 회의가 진짜 삭막해질 것 같아요. 좀 부드럽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닌 문제는 사활을 걸겠지만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사활을 걸 문제는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순리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좋은 말씀이십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신 것 같습니다. 추천 사항을 논의해보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로 할까요.

평의원 김진우 : 추천위원의 위원은 꼭 평의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격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주시죠.



평의원 이해진 : 첫 번째에 이재호 의원 평의원 아니신데 하셨던 걸로 봐서는
간사 김근태 : 30페이지보시면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시행규정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정관18조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에서 규정한 자는, 1호 내지 2호는 대학과 전문대학입니다, 대학평의원 또는 대학평
의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그리고
정관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
유가 없는 자로서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박정웅 : 평의원 중에서 선정한다고 하면 본인 동의하에 진행하면 되는데,
평의원이 아닌 교수님이나 동문으로 한다면 동의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해야 하니까,
두 가지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실 건지
아니면 평의원회 쪽으로 넘기실 건지 어떠신지요.

평의원 이해진 : 지금 지분은 없습니다.

평의원 박정웅 : 내부에서 정리한다면 오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여러분들이 동의해주신다면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1, 2차 때 학내 분과 외부 분이 1:1로 해서 왔고, 동문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학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라면 동문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동문이 한
명 왔고, 교수님과 직원 중에서 교수님이 한 분 오는 걸로 안배가 되지 않았나 싶습
니다.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안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의원 박정웅 : 전체 흐름 잘 아시는 이재호 의원님과 이해진 의원님께서 해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제가 협의회를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우 의원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평의원 김진우 : 처음 참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평의원회가 아니신 이
재호 평의원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자격도 평의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 이 내
부에서 2분을 다 결정할 경우에 여기 포함되지 않은 집단에서는 불만은 없겠는지 하
는 생각도 합니다. 동문회에서 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하는 것보다는
동문회 내부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드리면 그것을 동문회에 위임을 해주시면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시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날짜를 정해주셔야지 빨리빨리 끝날 것 같
습니다.

< 간서명란 >

의장



간사 김근태 : 오늘 이 자리에서 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일정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한 저희는 빨리 정리해서 법인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동문회에서 빨리 진행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평의원 김진우 : 저희 쪽에 1명에 대해서 위임을 해주시면 월요일이라도 결정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여러분들 말씀이 이재호 교수님하고 동문회쪽 한분 위촉하는 걸로 결정하신 겁니까? 혹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금번 추천위원 추천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원 동의)

평의원 이해진 : 추천해 주셨는데 동문회 쪽으로 의견을 넘겨서 죄송합니다.

평의원 김진우 : 결정되면 어느 분한테 알려드리면 될까요?

간사 김근태 : 의장님한테 주셔도 되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의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2명) 추천결과
- 이재호 평의원, 김진우 평의원 결정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가급적 월요일까지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시지요.

간사 김근태 : 25페이지를 보시면 2009년 11월에 대학평의원회 추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또 하나는 정관 제32조가 11월 29일에 동시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내용은 32조에 대학평의원회 위촉 1호, 2호를 보면 ‘교수회에서’, ‘직원회에서’ 하는 문구가 ‘교원을 대표하는’, ‘직원을 대표하는’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상위규정체계인 정관이 개정되고, 대학평의원회추천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하위 규칙이라 할 수 있는 3페이지에 보시면, 대학평의원회운영규칙 제3조, 평의원회 후보 추천이라고 있습니다. 교수회와 직원회, 총학생회는 평의원회 임기 만료 30일전까지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실효가 됐습니다. 규정류 관리규정에 의하면 상위 법령이나 규정 등이 제정됨에 따라 자동으로 하위 규칙들이 효력을 상실할 때에는 자동 개정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관 추천에 관한 수정 부분들, 대학평의원회 추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3조 평의원 후보 추천 조항을자동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간서명란 >

의장



평의원 이재호 :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 상위규정이 바뀌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 위배되는 하위 규칙들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 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이전에 교수 평의원을 교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교수회를 제외하고 교수들이 다시 평의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때 교수사회 반응은 이것은 교수회를 무력화하는 조치 중에 하나겠구나 하는 것이었 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방식에 의해서 실제 추천위원회 구성이 됐었고, 거기 모인 추천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교수회에서 추천한 5명을 그대로 추천했고, 거기에 더해서 회의록에 무엇을 남겼느냐하면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추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것은 대단히 불필요한 행위다. 어차피 교수회가 공식적인 기구고 전체 교수가 거기 에 소속되어 있고 전체 교수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대의원회가 있는데, 그것과 별 도로 이 한 번의 추천행위를 위해서 투표를 시행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 규정을 개정해서 다시는 이런 회의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규정이 개정이 안 되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수 평의원 중 한 명이라도 결원이 생기면 이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거죠.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투표 행위가 있고 거기서 선출된 분들이 모여서 그 추천위원회에서 평의원을 추천하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이번 추천위원회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이 됩니다. 잘못된 규정을 바꾸라는 얘기들도 오고갈 것이고 할 텐데 특별히 이 부분을 지금까지 1년 동안 놔둔 상태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고치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간사 김근태 : 저희 행정입장에서는 체계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법령이 엄연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규칙을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그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규정이 1년 반 가까이 개정이 안 되고 잠자고 있었죠?

간사 김근태 : 정리를 하라는 공문이 2009년 11월 26일 개정되고 나서 바로 웠습 니다. 학칙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 자동실효가 된다는 규정에서 개정을 하고 교무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공포가 됐습니다. 교수회, 직원회도 마찬가지고. 2010년 1 월 26일에 자동으로 됐고, 교수회 규칙,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칙과 관련되어서는 학교 규칙 또는 관련한 부서가 교수회는 창구가 교원팀이고, 직원은 총무팀 이렇게 있

는데, 공문은 알려드렸습니다만, 학내 분위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에 교원팀에서 교수회 쪽으로 공문을 전달한 적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교수회 전체에 관한 것이었고,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이재호 평의원께서 교무처에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자동으로 실효된 부분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교수회 규칙에 대해 학칙에 담는 부분은 교원팀에서 조만간 교수회 쪽으로 통지가 가서 협의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제가 그때 교수회 총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회 규칙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변경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결국은 재단이사장께서 규칙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체계가 맞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수회 규칙이 그게 문제를 되어서 바꿔야한다면 그 외 학교의 다른 규정도 규칙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다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교무팀에서 우리가 다 손댈 수는 없을 것 같다. 재단이사장께서 규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고 문제를 야기하는, 전반적인 현재의 학교규정체계를 뒤흔들 소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유독 교수회 규정에만 적용하려 한다면 다른 것에도 적용하자고 얘기한 것이고, 그랬더니 그러면 없었던 얘기로 하자고 되었습니다. 다시 현재 안전으로 돌아가서 내주에 있을 교수평의원 추천위원회에서 보나마나 현재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성토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 요구를 할 텐데 지금 시점에서 1년 반 동안 묵혀 뒀던 것을 다시 꺼내야 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간사 김근태 : 묵혀두었던 것은 아니고,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전달을 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나가야 하는데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시간을 오래 놔두다가 ‘갑자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번 중간에 독촉을 받았습니다. 사실 변명 아닌 변명 같지만 학내 사정에 의해서, 그리고 행정적으로 단순히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공문이라는 행정 행위의 진행으로 봐서는 엄연히 공란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었다가 갑자기 꺼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직원 선생님들은 바뀐 방법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평의원 박윤규 : 그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규칙개정안에 대해서 일반 평의원은 대학 총장이 선임하는 게 맞죠? 그리고 교원을 대



표하는 대학평의원은 교수회에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추천하는 거죠?

간사 김근태 : 대학평의원회 추천규정에 있는데 25페이지에 보시면 3조에 교원대표 선출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교원 대표 선출위원회가 있네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간사 김근태 : 선출단위가 있습니다. 2항에 읽어보시면 선출위원회는 각 단위소속에서, 각 단위소속이란 2조 3항을 보시면 대학교의 단위소속이란 각 단과대학과 단과대학에 속하지 않는 교원을 각각 1개 단위로 하는 단위그룹을 말한다. 3조 2항으로 다시 돌아와서 단위 소속에서 선출한 선출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위소속의 선출위원의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각 단위의 전임교원이 몇 명이냐를 기준을 삼아서 다양하게 인원비례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직원들은 10인 정도로 선출위원이 있네요.

간사 김근태 : 직원은 그렇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선출위원회가 한 번 정해지면 임기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생기면 그 때 그 때 선출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결원이 생기면 그 한 사람을 선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추천하는, 그렇기 때문에 참 한가하다, 그런 시간과 노력을 여기다 들여야 하는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총장 선출보다 훨씬 더 격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교수회라는 게 전체 교수가 다 참여하고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거죠.

평의원 이해진 : 교수회 조직이 전체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은데 각 교수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직보다는 제외된, 활동을 안 하는 교수님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제가 답변 드릴 위치는 아니지만, 교수님들의 속성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대표가 정해지면 잘 해주리라 믿고 빠지게 되는 거죠.

(박철균 의원 이석)

평의원 이해진 : 그러다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평의원 이재호 : 그러다보니까는 아니죠. 이것은 명백하게 교수회가 가지는 권한 중에 하나를 박탈하는 게 되겠습니다.

평의원 박상호 : 초중고등학교도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는 위원회를 조직해서 선거 전체를 관할을 해요. 그것은 선생님들 전체가 참여해서 투표를 해서 결정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교수회 대의원회입니다.

< 간서명 란 >

의장



평의원 박상호 : 직접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지, 간선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운영위원회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를 선정하는 것이니까 개개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것도 간선입니다. 사실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직선에 의해서 구성된 기구인 교수회 대의원회가 있는 마당에 단지 평의원 추천이라는 한 번의 행위를 위해서 그 때 그 때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다시 투표를 해서 선발하는 불필요한 수고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방법을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을 개정해야겠다고 안건을 올린 것 가지고 이재호 평의원께서 의견을 내신 것이죠.

평의원 박윤규 : 선출위원은 몇 분 정도 구성이 됩니까?

간사 김근태 : 3페이지 4번을 보면 이재호 평의원 말씀하신대로 지금 24명의 선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24명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24명 대부분이 전, 현 대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대의원으로 뽑힐만한 사람들을 선출위원으로 또 뽑는 거거든요.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단과대학에서 선출위원을 위한 선거를 또 하는데, 교수님들이 우리 단과대학 대의원들 있으니, 그 사람들이 가서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평의원 이해진 : 그것은 교수님들하고 총장님하고 관계에 의한 대표성 문제인 것 같아요. 선출위를 어떻게 구성하는 가에 대한.

평의원 이재호 : 총장과도 상관없습니다. 규정은 재단에서 발의를 해서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버린 거죠.

평의원 이해진 : 또 말씀드리지만 평의원회가 총장의 자문, 심의기구이죠. 평의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교수님들 중에서 평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총장과 선출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평의원이 구성되어 있으면 평의원회를 운영하는 거지, 각 직원분들 교수님들 동문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어떻게 선출하는 것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평의원회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제가 반대 의사를 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

< 간서명란 >

의장



어봐서는 제가 평의원님들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두 분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총장하고 협의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재단이사회에서 처리하고, 규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총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위원들이 못 뽑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추천위원들이 다음 주 회의의 결과를 100%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수회에서 추천한 분들이 그대로 될 겁니다.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하도록 만드는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교수사회에서는 이것이 평이 굉장히 나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원래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이 나오는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새 규정으로 다음 주에 진행이 되고, 바뀐 규정으로 문구를 고쳐야겠다고 해서 이런 안건이 올라온 겁니다.

평의원 박윤규 : 어차피 교수회에서 선출위원도 선출될 거 아닙니까. 그 힘이 그 힘으로 가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평의원 이재호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또 다른 의견들 말씀해주시죠. 시간을 많이 끌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바뀐 이것에 따라서 자꾸 수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평의원 박정웅 : 내용상에 변화가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하위 조항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임기만료 일을 15일 전으로 하고, 결원 보충은 30일 이내로 한 것은 시기적인 적절성 때문인 거죠?

간사 김근태 : 정관은 개정된 것을 참고사항으로 넣은 것이고,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규칙 개정 3조입니다.

평의원 박정웅 : 다른 건 없잖아요?

간사 김근태 : 네, 실효가 됐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평의원 박정웅 :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투표를 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재호 평의원님 어찌십니까?

평의원 이재호 : 합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혹시 개정되어야 한다, 수정되어야 한다는 분도 많이 계십니까? 이재호 평의원께서 제기한 문제는 자구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안 바꾸고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이걸 바꿔야만 되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평의원 박정웅 : 이해진 평의원과 박윤규 평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재호 평의원하고 별개로 바꿔야 될 부분이지 내용으로는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패스되고 패스되지 않고 이것에 영향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구 수정이니까 패스가 되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의원 김진우 : 대학평의원 추천규정이 2009년 제정이 됐습니다. 이게 됐기 때문에 평의원회 규칙을 안 바꾸면 서로 안 맞는 상태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여기서 이것을 안 바꾸면 둘 중에 하나는 바꾸어야겠죠. 평의원추천규정을 바꾸거나. 평의원추천규정은 어디에서 제정하는 거죠?

간사 김근태 : 법인에서 합니다. 규정 이상, 그러니까 정관과 규정은 법인 소관사항이고, 규칙(학교의 규칙)은 학교의 장인 총장님께서 하게 됩니다. 정관과 규정 그 다음 밑이 규칙입니다.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표결을 통하여 안건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13명이기 때문에 7표가 나오기 전에는 통과가 어렵습니다.

(이재호 의원 이석)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박철균 의원 참석)

평의원 박상호 : 심의안건으로 올라왔으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도록 하시죠.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것에 찬성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주시죠. 7분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럼 통하여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안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간사 김근태 : 안건은 아니고 보고사항입니다. 동문대표로 오신 김진우 평의원께서 새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원대표 대학평의원 추천을 위한 선출위원회 24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선출위원회 첫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교원대표 평의원2분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총학생회는 어떻게 되나요?

간사 김근태 : 학생회장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쪽에도 곧 추천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로 동문대표가 오셨고, 교원대표와 학생대표도 선출하게 되면 위원

< 간서명란 >

의장



위촉장 수여식을 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회의 개최하는 시점에 위촉장 수여식을 결산과 일정을 맞추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의장이 공석인데 규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간사 김근태 :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 33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부의장 대리도 뽑아야 됩니까?

간사 김근태 : 의장과 부의장은 대학평의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호선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그 건은 나머지 평의원이 다 충원이 되면 그 때 처리하기로 하죠.

평의원 이해진 : 유고시라는 게 1회에 한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간사 김근태 :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의원 이해진 : 유고라는 게 계속 그러나, 한 번 빠진거나 그것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간사 김근태 : 의장은 연구년 수행으로 평의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장이 유고인데, 부의장은 계시니까 유고시에 이를 대리하는 것이고, 정관에 의하면 의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므로 유고를 장기적으로 가져 갈 수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평의원 이해진 : 평의원회 전체가 다 있는 상태에서 의장을 뽑아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평의원 박정웅 :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은 아마 명문화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 없을 테고, 직무대행하고 있는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음 주면 다 충원이 되니까 그 때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해진 : 제 개인적 생각인데요, 지난 번 대학평의원회 운용했을 때와 지금 대학평의원회의 차이가 시간상으로 반이 줄어들고 이런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좋아서, 의사결정 효율화를 꾀할 수 있어서, 아쉬워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계속 하셨으면 해서 말씀하신 거죠?

평의원 이해진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그 문제는 충원이 다 모인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은 없죠?

< 간서명 란 >

의장



간사 김근태 : 네,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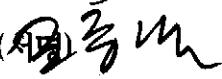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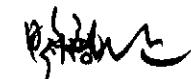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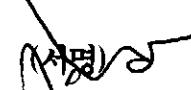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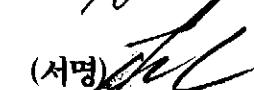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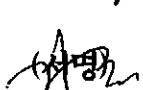
의장 직무대행 주동표 : 그러면 이것으로 제30차 평의원회를 폐회하겠습니다.

< 간서명란 >

의장



2011년 4월 1일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주 동 표	(서명) 
평의원	조 중 열	(서명) 
평의원	이 재 호	(서명)
평의원	박 철 균	(서명) 
평의원	박 정 응	(서명) 
평의원	임 원 형	(서명)
평의원	이 해 진	(서명) 
평의원	김 진 우	(서명) 
평의원	박 윤 규	(서명) 
평의원	박 상 호	(서명) 
기록	김 근 태	(서명) 

< 간서명란 >

의장

